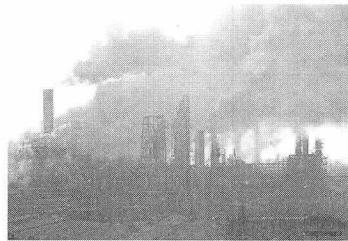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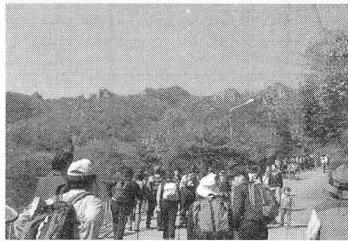


# 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

◇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◇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◇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



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,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.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되며,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

가 시행된다.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이 확대되며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게 된다.

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.

〈편집부〉

| 번호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전  | 달라지는 내용  |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어른(1,600원)</li> <li>• 청소년·학생(600원)</li> <li>• 어린이(300원)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</li> </ul>   | 자연공원법<br>제37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연자원과<br>☎ (02)<br>2110-6755       |
| 2  | 5.5톤이상 경우 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5.5톤이상 자동차는 무부 하급가속방법 적용</li> <li>• 검사수수료 : 18,000원</li> <li>* 5.5톤이하 자동차만 부하 검사 적용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동차 정밀검사시 5.5톤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 적용</li> <li>• 검사수수료 : 30,000원</li> </ul> | 대기환경보전법<br>제37조의3, 같은법<br>시행규칙 별표 25<br>(2007.7) | 교통환경<br>관리과<br>☎ (02)<br>2110-6859 |
| 3  |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           | 〈신 설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는 위반내역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| 수도법 제18조의2<br>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     |
| 4  |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·제공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·제공하여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법 제19조의3<br>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     |

| 번호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| 달라지는 내용   |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  | 급수설비 관리 강화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</li> <li>■ 급수설비 노후, 수질기준 초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 소유자에게 시설개선 권고 가능</li> <li>■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(2007.1)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|
| 6  | 수도시설 위생상조치 강화            |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돗물을 다양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</li> <li>■ 소독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 외에 급수관 상태검사 및 세척·갱생·교체 의무를 추가함</li> </ul>   | 수도법 제21조 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|
| 7  |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             |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돗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, 배수지, 가압장, 급·배수관, 저수조,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</li> <li>■ 정수장, 주배수지 전후, 급수구역 유입부, 급수구역내 가입장 유출부,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,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, 급수구역 관찰, 수도꼭지로 명확히 함</li> </ul> | 수도법 제19조 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|
| 8  |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     | 〈신 설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</li> </ul>   | 수도법 제17조의4 (2007.1)                    | 수도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876  |
| 9  |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(분리배출) 대상에 포함 |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화장품 유리병은 폐기물부 담금 대상으로 분류</li> <li>■ 재활용의무대상(EPR 대상)으로 변경–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</li> </ul>  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2007.1) | 자원재활용과<br>☎ (02)<br>2110-6955 |
| 10 | 대기환경기준강화                 | –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 기준이 설정된 항목중 일부 항목 (<math>\text{NO}_x</math>, <math>\text{PM}_{10}</math>)의 환경기준 강화</li> </ul>   |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(2007.1)              | 대기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782  |
| 11 |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       |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강보호항목 : 중금속 중심으로 9개</li> <li>■ 대장균군은 종대장균군으로만 측정 〈신 설〉</li> <li>■ 벤젠 등 8개 유해물질을 건강보호항목에 추가하여 총 17개 항목으로 확대</li> <li>■ 대장균군 항목에 분원성대장균군 추가</li> <li>■ 수질 등급별 생물지표종 도입</li> </ul>               |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(2006.12)          | 수질정책과<br>☎ (02)<br>2110-6623  |



다  
와  
이  
여  
는

| 번호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| 달라지는 내용   |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 |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 | ■ 제품(기기·자재 포함)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  | ■ 제품, 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도 인증대상에 추가<br>- 예: 세탁, 인쇄 등  |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(2007.7)         | 환경경제과<br>☎ (02)<br>2110-6677    |
| 13 | 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                 | ■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<br>■ 평가·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            | ■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·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 |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(2007.7 예정)             | 환경기술과<br>☎ (02)<br>2110-6720    |
| 13 | 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                 | ■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<br>■ 평가·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            | ■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·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 |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(2007.7 예정)             | 환경기술과<br>☎ (02)<br>2110-6720    |
| 14 |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에 독성평가항목 추가       | 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급성독성, 유전독성, 분해성 시험성적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수생생태독성(어류급성독성, 물벼룩급성독성, 조류급성독성) 시험성적서 3개 항목 추가  |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(2007. 1)         | 화학물질 안전과<br>☎ (02)<br>2110-7958 |
| 15 | 환경영향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              | ■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, 재해, 인구환경 등 영향평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, 교통, 재해, 인구영향평가제도 삭제<br>■ 간이평가절차 도입,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평가 관련정보 제공   | 환경영향평가법 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평가과<br>☎ (02)<br>2110-7625    |
| 16 | 제작자동차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        | 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(OBD) 부착 대상<br>- 소형 휘발유 자동차는 30% 이상<br>-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소형 경유차 100% | 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(OBD) 부착 대상 확대<br>- 모든 휘발유 자동차 100% 부착<br>- 경·소형 경유 승용자동차 100% 부착 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(2007.1)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환경 기획과<br>☎ (02)<br>2110-6806 |
| 17 |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    | 〈신 설〉   | 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결함시정(보증 수리)을 실시한 경우 결합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<br>■ 부품의 결함건수 및 결함비율이 일정요건에 도달하면 지방적 내지 강제적으로 리콜실시 |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3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, 44조 ('07.7.1) | 교통환경 관리과<br>☎ (02)<br>2110-6861 |



| 번호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| 달라지는 내용   |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8 |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휘발유 자동차는 '06년 신규인증신청차량만 ULEV 기준 적용</li> <li>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25%이상 적용</li> <li>-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LEV 기준 적용</li> <li>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'06~'07.6월기간중 출고되는 차량</li> <li>- 경유자동차는 경·소형승용차만 EURO-4 기준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휘발유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</li> <li>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50%이상 적용</li> <li>-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</li> <li>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'07.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</li> <li>- 경유자동차 EURO-4 기준 적용 대상을 '07년 신규인증신청차량 중 소형승용(2.5t초과), 소형화물, 중형승용·화물자동차로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 ('07.1.1)            | 교통환경 기획과 ☎ (02) 2110-6806 |
| 19 |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        | 〈신 설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물질을 관리</li> </ul>  |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 내지 22조 ('07.7.1)       | 대기총량 제도과 ☎ (02) 2110-7928 |
| 20 | 대기배출부과금 산정방식 개선 및 보고주기 완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사업자는 예정 및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</li> <li>■ 지자체는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(월1회) 및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(연4회) 제출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자의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의 무를 삭제하고, 기본배출부과금은 확정배출량에만 근거하여 부과</li> <li>■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보고주기를 완화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처분 현황을 반기 1회 제출</li> </ul>  |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('07.1.1) | 대기관리과 ☎ (02) 2110-6688    |
| 21 |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        | 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반도체 제조시설,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(RDF)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(RPF) 등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의 새로이 설정 시행</li> <li>■ 시멘트제품 제조시설의 염화수소, 선박 제조시설 등의 도장시설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(THC) 배출허용기준 완화</li> </ul>  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 ('07.7.1)             | 대기관리과 ☎ (02) 2110-6789    |
| 22 |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 시행 | 〈신 설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일 2000m<sup>3</sup>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원격감시를 시행</li> </ul>   |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(2006.7)                   | 산업폐수과 ☎ (02) 2110-6845    |
| 23 |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       | 〈신 설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 및 합성수지포장재 연차별줄이기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(2007.8)      | 자원순환 정책과 ☎ (02) 2110-6919 |